

거창군의회사무과

목 차

1.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1 면
2.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면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검토보고서	6 면
4.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	12 면
° 사회복지과	12 면
° 재무과	28 면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 : 2005. 1.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의안번호 : 제 2005 - 7호

2. 변경안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시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나
-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서 “거창군노인회육성 자립기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2000.12월 거창군노인복지기금으로 예치한 것에 대하여 반환청원이 있어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

3.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단 위 : 천원)

구 분	2004년말 현 재 액	2005년 운용계획안			2005년말 현 재 액
		수 입	지 출	증 감	
당초 계획	795,810	127,853	0	127,853	923,663
변경 계획	795,730	127,853	100,271	27,582	823,312

4. 검토의견

- 거창군노인복지기금은 1999.4.15 제정된 거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2004년말 현재 적립액은 795,810천원이며, 금년도는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27,853천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당초 운용계획안을 승인하였음.
- 변경계획안에서 반환코자하는 (사)대한노인회거창군지부의 노인회 자립기금 100,271천원은 거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전 정부의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노인회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92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부담금으로 조성되어 오던 것으로 이는 군기금이 아닌 노인회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노인회 자립기금을 군기금화 하려면 조례에 이를 명문화하고 해당법인체의 기부동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과 감독관청의 승인 등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 절차없이 군 기금화한 것은 위법인 것이며, 노인회의 자립기금 반환요구는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소멸시효 이내인 것으로 정당한 요구로 검토됨.
- 기금목표액 10억원 달성단계인 현시점에서 조성기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시의 업무처리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반환하게 될 기금에 대하여는 상조회운영금으로 이용할 계획인바, 실제 상조회비 납부자는 363명(경로당 150개소)으로 노인회 자립기금으로 상조회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노인자립기금조성 원래의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금으로 통합된 2000.12.15부터 현재까지의 발생이자를 반환하지 않으나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 경과되어야 시효소멸되므로 기금반환시 이에 대하여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2
----------	--------

제출일자	2005. 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2001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개정으로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으로
- 위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2004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일반소형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 금년부터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하게 됨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계형 차량은 종전과 같이 과세하고, 그 외 대상 차량의 인상률을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전방조정자동차 봉고, 베스트아,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현재와 같이 일반소형버스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15조의3 제1호) : 현재 65,000원
- 그 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함.(안 제15조의3 제2항)
 - 2005년 : 승용자동차의 “33%” ⇒ “16.5%”
 - 2006년 : 승용자동차의 “66%” ⇒ “33%”
 - 2007년 : 승용자동차의 “100%” ⇒ “50%”
 - 2008년 : 승용자동차의 ⇒ “100%”

□ 개정근거

- 행정자치부 세제과-2834(2004. 12. 21)
- 경상남도 세정과-10178(2004. 12. 22)
- 「지방세법」 제19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4
- 「자동차관리법」 제3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5조의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가조 소방파출소 건물 신축
2. 공영 제2주차장설치 대상지 변경 취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2차)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1. 20
- 라. 의안번호 : 제2005 - 5호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재해·재난등 각종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의 소방관서신설 계획에 따라 가조소방파출소를 도 소방본부에서 신축후 양여확약에 따른 재산의 취득과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2주차장 설치 대상지의 위치변경 및 토지구입비 30%이상 증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함.

나.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89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다.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구분	재산종별	소재지	물건 지목	수량 (㎡)	예정금액 (천원)	비 고
소방파출소	행정재산	가조 마상 467-6	건물	291	216,309	도비로 건축
제2주차장	행정재산	4필지		1,274	1,542,200	1,995백만원 소요
		거창 중앙 150-3	대	126	191,520	위치변경
		150-4	잡	443	691,080	
		151-3	대	205	311,600	
		157-4	대	500	348,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가조 소방파출소 건물신축

○ 가조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거창군소유의 토지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후 거창군에 무상양여 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2005.12.31까지 부지 사용 승낙을 한 것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양여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의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소방업무는 시군의 지원업무로 분류되어 소방청사 신축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시군에서 확보하고 시설물설치는 도 소방본부에서 건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됨.

- 동 소방파출소의 부지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것으로 부지면적은 1,384m²이며, 119백만원에 구입한 것임.
- 건축되는 소방파출소는 철근콘크리트 스투보조 2층 건물로서 연면적 291m²이며, 2005.4.1부터 2005.6.30일까지 도비 216,309천원을 투입 건립할 계획으로 있음.
- 대상부지는 관리지역으로 소방파출소 건축 제한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공영 제2주차장 설치대상지 변경 취득

- 제2주차장조성사업은 2004.7월 거창읍 대동리 859-1번지 일원에 1,459m²를 승인하였으나 제114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시 제1주차장에 연접한 원예협동조합 부지를 매입하여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과 사업비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임.
- 검토결과 제2주차장 대상사업지 소유자중 1인이 매각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잔여대상지를 확보하더라도 진입로 확보가 불가하며, 조성된 제1주차장도 주차가능대수가 28대 정도에 불과하므로 제1주차장에 연접한 원협부지를 확보하면 70대정도 주차공간이 확보되므로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클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업지가 변경되면 부지매입비는 기 확보된 제2주차장 사업비 20억원(국비12, 군비8)으로, 공사비는 제1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원(교부세8, 군비5)중 집행잔액 3억 5천만원으로 총당 하

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계획변경에 따라 부지는 185㎡ 감소되나 사업비는 675백만원 증가

○ 그러나 원협에서 사용중인 건물전체를 철거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인 바, 건물중 점포 및 일반시설로 이용중인 건물은 1984년도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건립한 것으로서 구조상 하자가 없어 향후 여러가지 용도로 이용가능한 것이며, 실제 건물철거시 주차대수도 20여대에 불과한 것이므로 철거 보다는 존치하여 활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대상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주차장법에 제한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주차장부지내 건축물 현황

구분	구조	면적(㎡)	건축년월일	추정가액	비고
계 4동		1,265.3		381,310	원예협동조합
점포및업무시설	철콘/스라브	599.1 (1층334.4 2층264.6)	84.7.16	248,625	
점포 및 사무실	"	128.3 (1층 64.2 2층64.1)	85.12.5	47,176	
판매시설	경량철골/스레트	465.9	91.12.30	77,805	
점포시설	결량철골/판넬	72.0	92.7.23	7,704	

4.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82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 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95·5·16, 96·4·27, 98·7·16, 2000·10·20, 2002·11·29>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

○ 제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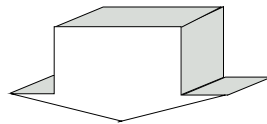
사회복지과 소관

2005年度 主要業務 推進計劃

推進方向

군민 모두가 잘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 거창복지 수준의 Upgrade로 삶의 질 향상



重點推進施策

1. 低所得層 郡民 保護支援 強化
2. 脆弱階層에 對한 福祉서비스 擴大
3. 女性이 幸福한 社會 만들기
4. 葬墓文化 改善事業 持續推進
5. 參與하는 自願奉仕活動 展開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좋은 居昌

基礎生活保障受給者 生活安定 支援

- ◆ 최저생활보장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필요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화 도모
- ◆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천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現 況

계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2,087	3,507	2,013	3,383	74	124

※ 의료급여 대상자 : 2,245가구 , 3,745명(1종 1,802가구, 2,550명, 2종 440가구, 1,195명)

□ 推 進 計 劃

- 법정급여 적기 지원 : 2,087세대 5,846백만원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 12가구, 24백만원
- 자립고취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 10가구, 50백만원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WorkShop 개최(30명) : 6,000천원
- 명예사회복지사 위촉 운영 : 민·관 네트워크(NetWork) 구축
-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단 확대운영 : 3개사업단 ⇒ 5개사업단
 - ┆ 청소사업단 :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5개소)
 - 현행 ┆ 집수리사업단 : 자가소유 수급자 주택수리 지원(200가구)
 - ┆ 간병도우미사업단 : 재가간병 및 병원간병 활동(150명)
 - 추가 ┆ 방과후 교실사업단 : 수급자 자녀 학습지도 및 진로상담 등
 - ┆ 음식관련 사업단 : 분식업 등 창업지원을 통한 자활기반 마련
-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및 관리
 -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실시 및 2종 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활용 홍보강화
 - 부당진료비 청구예방을 위한 진료기관 조사 강화 및 장기입원자 실태 수시점검
- ☆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적극 활용(관리사 1명)

高齡社會에 對備한 老人福祉 增進

- ◆ 노인 인구가 19%로 이미 Aged Society로 진입
⇒ 안정적 노후 생활보장과 노인여가 활동에 따른 지원 지속 추진
- ◆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들의 실질적 소득 보장
⇒ 노후생활 안정도모

□ 老人人口 現況 ('04. 11월말 현재)

- 12,260명(전체인구 65,800명의 18.6%), 경남도 9.5, 전국 8.6%

□ 推進計劃

○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

- 어버이날 기념식 및 내실있는 경로주간 행사 : 12개소, 84백만원
-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게이트볼, 휘호대회 : 10월중, 12백만원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경로연금 지급 : 연25,680명, 1,040백만원
- 노인교통수당 지급 : 연50,828명, 1,494백만원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지원 : 648명, 39백만원
- 노인건강진단 실시 : 131명, 3백만원
-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 23명, 10백만원
- 경로식당(12개소) 운영 : 24,000명, 36백만원
- 가정봉사원파견센터(1개소) 운영 : 80세대 결연, 80백만원
- 노인인력센터(일자리창출) 운영 : 연11,370명, 114백만원

○ 노인여가 활동지원

- 노인회 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 : 분기별 6,100천원, 24,400천원
- 노인복지 기금조성 : 1억원(10억 조성 목표, '04년말 현재 7.9억원 적립)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 40명, 10백만원
- 노인대학 운영 : 3백만원

- 효·예절학습당 운영 : 3백만원
- 할아버지 선생님 관내 중학교 방문 효·예절 관련 교육실시
- 시기 : 연중 수시

○ 저소득 노인세대 후원

- 후원자 발굴 및 결연사업 추진
 - 요구르트 배달사업 적극추진
- (수혜자 150명, 후원자 150명, 1구좌 연48,000원)

○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

-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단위 : 백만원)

계		신 축		보 수		비고
개소수	소요사업비	개소수	소요사업비	개소수	소요사업비	
20	488	7	340	13	148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 361개소, 448백만원

「노인전문요양 시설」 건립

◀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치매·중풍노인을 입소시켜 서비스 제공 ▶

- 시설현황
 - 위 치 : 거창읍 송정리 96(1,930평)
 - 건 평 : 340평정도
 - 입소정원 : 50인
 - 사업기간 : '04~'05('05. 10월 완공 예정)
- 사 업 비 : 1,479백만원(국비698,도비348.5,군비348.5,자부담84)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자부담	
계	1,479	698	348.5	348.5	84	
전문요양시설신축비	1,229	573	286	286	84	
전문요양시설장비보강	250	125	62.5	62.5		

- 사업추진 : 사회복지법인 경남복지원

「경로당 결연사업」 추진

- ◆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기관 과 결연을 맺어 봉사 및 Service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
- ◆ 어린이와 노인과의 만남을 통해 노인에게는 삶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고 어린이에게는 경로효친사상을 실천

1 機關 1 敬老堂 結緣事業

□ 施策概要

- 결연시기 : '05. 1월 ~ 2월중
- 결연방법
 - 군단위 기관(결연희망)과 면내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1 : 1결연
 - 읍면별 1개소씩 12개소 시범실시

□ 推進計劃

- 결연 기관은 월 2회이상 경로당을 방문
 - 봉사활동 전개(경로당 및 주변청소)
 - 행·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Service 제공
- 사업시행 효과분석 후 확대시행

2 어린이집과 敬老堂 結緣事業

□ 現 況

- 보육시설 : 23개소(국공립 5, 종교부설 2, 민간 16)
- 경 로 당 : 361개소(읍 77, 면 284)

□ 施策概要

- 결연시기 : '05. 3월중
- 결연방법
 - 관내 보육시설에서 희망하는 읍면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1 : 1결연
 - 결연 희망 신청에 따라 15개소 시범실시

□ 推進計劃

- 결연을 맺은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분기별 1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
 - 봉사활동 전개(재롱잔치, 추석송편드리기, 어버이날 꽃달아드리기 등)
- 사업시행 효과분석 후 확대시행

葬墓文化 改善事業 持續推進

- ◆ 무질서하게 매장되어 있는 마을공동묘지를 공설공원묘지로 정비 국토의 효율적 이용
- ◆ 기 설치된 납골묘 납골유도 및 화장장려금 지급 등으로 매장위주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

□ 2004년까지 推進實績

- 공설공원묘지 조성 : 완 료 5개소 (북상, 가조, 가북, 거창, 남상)
추진중 1개소 (고제)
- 납골묘(가족·문중)설치 : 201기(납골능력 25,155구)
- '99년 : 6, '00년 : 18, '01년 : 17, '02년 : 71, '03년 : 64, '04년 : 25
- 화장장려금 지급 : 140명, 35백만원

□ 推進計劃

- 공동묘지 재정비사업
 - 위 치 : 고제면 봉산리 1309번지
 - 사업량 : 15,455㎡ (매장500구, 납골묘1기)
 - 사업비 : 600백만원
 - 추진일정
 - 2004. 10~11월 : 주민 설명회 및 협의, 동의서 징구
 - 2004. 11~12월 : 실시설계
 - 2005. 1~2006. 12 :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
- 화장 장려금지급 : 140구
 - 소요사업비 : 35백만원 (1구당 25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거창군내 주소를 둔 사망자로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자
- 납골묘 설치사업
 - 2005년 부터는 지원사업 중단
⇒ 자력사업에 한해서 추진하되 관련규정 엄격적용(도로변 가시권밖 등)
 - 기 설치한 납골묘 납골 유도(홍보)

障碍人 福祉增進 施策 推進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응력 배양을 통해 재활의욕을 고취

□ 障碍人 登録現況

(‘04. 12월 현재)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신장	심장	기타
3,029	1,775	205	303	316	218	6	95	54	19	38

※ 거창군 전체인구(65,981명) 대비 4.6%

□ 推進計劃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보장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진단비 지원
- 재활보조기구 지원 : 47명, 5,264천원
- 전동휠체어 지원 : 4대, 8,000천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60,000천원 (1인 15,000천원 대여)
-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 2가구, 10,000천원

○ 사회적응력 배양 및 재활 의욕 고취

-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및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 : 30,000천원
- 장애인 부모회 가족캠프 및 장애인 1일 나들이 : 6,200천원
- 시각장애인 녹음도서 제작 보급 : 4,800천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2개소, 59,445천원
-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지원 : 16,200천원
-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 : 15,000천원
- 장애인 복지센터 지원 : 심부름센터(48,716천원), 수화통역센터(55,000천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 62,500천원

○ 시각장애인 『약손 봉사단』 운영 지원 : 4,000천원

- 사업기간 : 2005. 2. ~ 12월중 농한기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 내 용 : 수기요법에 의한 맛사지, 지압, 안마, 쑥뜸 등
- 봉사단체 : 시각장애인협회거창군지회(회장 권종복)

內實 있는 兒童福祉 推進

-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부모의 보호없이 살아가는 18세미만의 아동을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관심 제고

□ 保育施設現況

(2004. 12말 현재)

구 분	시설수	보 육 아 동			종사자수	비고
		계	영아	유아		
계	26개소	1065명	262명	762명	130명	
국공립 보육시설	5개소	278명	78명	200명	32명	
종교부설 보육시설	2개소	86명	26명	60명	12명	
민 간 보육시설	16개소	656명	184명	484명	80명	
가 정 보육시설	3개소	45명	27명	18명	6명	

※보호 아동 : 소년소녀가정(2세대 2명), 가정위탁아동(56세대 75명)

□ 推進計劃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 강화

-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26개소 2,607백만원 정도
 - 종사자인건비, 저소득아동보육료, 차량비, 교재·교구비 등
- 민간보육시설 지원 : 19개소 30백만원
 - 운영비(차량비, 일반아동 간식비)보조 및 평가 인센티브 부여
- 보육아동 재롱잔치 : 2천5백만원

○보육시설 운영 실태 지도점검 : 년 1회 이상

○아동복지사업 추진

- 소년 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54세대80명, 100백만원
-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 750명 430백만원
-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보수 : 22개소 11백만원
- 입양아동 지원(양육비, 의료비) : 1명 9백만원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비 지원 : 1개소 24백만원
- 아동위원회 운영 : 년 4회 29명 11백만원
- 어린이날 기념행사 : 2,000명 10백만원

低所得 母・父子家庭 支援 및 保護

□ 現 況

- 모자가정 : 134세대 381명, ○ 부자가정 : 43세대 113명

□ 推進計劃

- 자립지원사업 : 537명 144,405천원
 -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생활자립지원비, 월동용연료비, 반찬지원비 등
- 한 부모가정 행복한 세상 만들기 사업 추진 : 210세대 21,300천원
 - 문화탐방실시, 대학진학자녀 장학금지원, 재가방문상담, 재가모자가정
김장비 지원, 부자가정반찬지원사업
- 후원결연사업 : 후원자 발굴 및 지원(현재 281명 결연)

報勳團體 支援 및 顯忠施設 整備

□ 現 況

(‘04. 12월말 현재)

단체명	계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6.25참전 전우회	월남참전 전우회
회원수	1,522	178	89	116	63	761	315
지회장	6개단체	신재범	유태연	김차선	유창욱	정기환	박 동

□ 支援 및 管理

- 운영비 지원 : 각 단체별 적정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보훈관련단체 자궁심 고취사업 추진(3회, 11,210천원)
 - 보훈3단체(상이군경,유족,미망인) 전적지 견학 : 5,760천원
 -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 3,000천원
 - 보훈가족 고령자 경로위안행사 : 2,450천원
-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상이군경회 행사위탁) : 7,000천원
- 충혼탑(봉안각 등) 시설 정비 : 3,000천원
- 보훈회관 정비사업 : 15,000천원

女性の 能力開發과 兩性平等文化 擴散

21C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해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교양증진과 더불어 여성 경쟁력 강화로 서로가 평등하고 공존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 여성능력 개발

- 여성주간 행사 실시 : 1회 500명 (7. 1 ~ 7. 7)
 - 여성발전 기여자 표창, 축하공연, 특강 등
- 각종 교양 및 전문기능 교육실시 : 연중
 - 읍면 순회교육 : 12회 1,200명, · 여성교양강좌 : 2회 1,000명
 - 여성건강교육 : 1회 500명 · 여성전문기능 취득사업 13회 420명

○ 양성평등문화 확산

- 여성단체 활동사업 지원 : 각종 봉사활동 보조금 지원
-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 남녀차별 시정창구 및 여성공무원 고충민원 창구 설치 운영
- 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발전기금 조성('02~'06) : 1.2억원(5억원목표, 2.6억원 적립)
-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 목표 30%이상
- 여성의 방 운영 : 여성단체 및 기타단체 교육 및 간담회 등 활용

○ 『가족사랑이야기』 공모전 및 발표회 개최

- 공 모 전 : 2005. 5월 ~ 6월
- 심 사 : 2005. 6월중(문인협회 등 전문가 초빙심사)
- 시 상(학생부, 일반부 구분) : 12편(최우수 각 1편, 우수 각2편, 장려 각3편)
 - 시상금 및 참가자 문화상품권 지급 : 3,000천원
- 발 표 : 최우수 수상자 직접 낭독(2명)

參與하는 自願奉仕 活動 展開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 확산과 군민의 봉사활동 참여도를 극대화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 자원봉사자 모집확대 및 활동의 극대화

- 자원봉사자 모집 : 연중
- 대 상 : 전군민
- 홍 보 : 홈페이지 게재, 자원봉사안내 리후렛 제작, 지역신문 등

○ 전문봉사단 발굴 및 육성

- 전문봉사단 유형 : 이미용, 컴퓨터, 한방
- 실태조사 : 2005. 2. ~3월중
- 전문봉사단 등록 및 활동사항 파악 : 등록 4월, 활동사항 파악 월2회

○ 하계 학생자원봉사활동 실시 : 200~400명

○ 자원봉사 참여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

- 우수 봉사자 (봉사단체) 발굴 및 포상 : '05. 12월
-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대축제 등의 개최로 참여분위기 조성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들어주기
-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지속운영
 - 개인별 자원봉사 활동시간 저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표창확대 : 우수단체 및 개인표창
 - 단체(5개 단체) : 표창 및 시상(1,000천원) · 개인(5명) : 표창

老人·女性·障碍人 삶의 쉼터 造成事業

□ 사업개요

- 위 치 : 거창읍 송정리 산 96번지 일원(거창관광호텔 옆)
- 사업기간 : '03. 3월 ~ '06. 12월(계속비사업)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4,939m²(4,519평)
 - 건축면적 : 4,979m²(1,506평),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 여성·노인복지관 : 3,029m²(916평)
 - └ 장애인복지관 : 1,950m²(590평)
 -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3	2004	2005	2006
계	8,500	1,100	1,819	3,772	1,809
국비	763		245	518	
도비	2,000		746	1,254	
군비	5,737	1,100	828	2,000	1,809

◇ 시설별 내역(기본계획안)

▷ 여성·노인복지관(916평)

- 지하 1층 : 강당, 체력단련실, 샤워장(남,여), 기계·전기실
- 지상 1층 : 사무실(취업상담실), 화장실(남,여), 주간보호센터, 노래연습장 휴게공간
- 지상 2층 : 소회의실, 이미용실, 포켓볼, 장기바둑실, 온돌휴게실(남,여), 소강당, 화장실(남,여),
- 지상 3층 : 사회교육실(1,2), 요리교실, 임시보호실, 여성상담실, 자원봉사자실(어린이놀이방), 화장실, 인터넷카페

▷ 장애인복지관(590평)

- 지하 1층 : 목욕탕(남,여), 화장실(남,여), 주방/식당, 기계실

- 지상 1층 : 통합사무실, 화장실(남,여), 상담실, 심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주간보호실
 - 지상 2층 : 화장실(남,여), 진료실, 사회교육실(1, 2), 체력단련실, 자원봉사자실, 작업치료실
 - 지상 3층 : 강당, 화장실(남,여), 녹음도서실, 컴퓨터교실
- ▷ **옥외 시설** : 생태산책로(허브정원, 일광욕장, 지압마당), 운동시설(배드민턴 등), 체력단련장, 찜지마당, 생태수공간, 잔디마당(게이트볼장 등), 어울마당 등

□ 그 간의 추진사항

- '03. 3월 : 기본계획 수립/'04년도 국고보조 신청
- '03. 4. 22 : 도비지원 건의/지원방침 득함(20억원, 군수 ⇒ 도지사)
- '03. 7. 9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군의회)
- '03. 10. 16 : 경상남도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 '04. 1. 26 : 부지매입(4,519평, 유연분묘 13기, 8.1억원)
- '04. 3 ~ 5월 : 관련시설 벤치마킹 실시 및 의견수렴
- '04. 5. 21 ~ 7. 20 : 설계경기 공모(공모 34개업체, 작품접수 8개업체)
- '04. 7. 27 : 당선작 선정(부산소재 : 시반건축사사무소)
- '04. 9. 1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기간 : '05. 1. 15일)
- '04. 10. 12 : 일본 선진복지시설 견학 (공무원, 군의원, 설계팀 등 7명)
- '04. 11. 9 : 기본설계안 최종 검토(자문위원회 심의)
- '04. 11. 16 : 기본설계 최종안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04. 11월 ~ '05. 1월 : 실시설계(최종보고회 개최/확정)
- '05. 1월 : 각종 행정절차 이행(건축협의 등)
- '05. 3월 ~ : 사업발주(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18개월정도)
- '06년도 하반기 : 공사완료(개관)

사회복지관련 기금 운용계획

I. 기금현황

기금명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 년도	기금조성 (천원)			비 고
				기간	목표액	조성액	
저소득 주민자녀장 학기금	거창군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주민 자녀의 자활 능력 배양	1992	'92~ 2005 (14년)	300,000	290,838	
노인복지 기 금	거창군노인복지 기금 설치및운용 관리조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999	'99~ 2006 (8년)	1,000,000	795,810	
여성발전 기 금	거창군여성정책발전 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	여성이위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2002	2003~ 2007 (5년)	500,000	265,882	

II. 현 실 태

□ 기금의 용도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저소득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노인복지기금
 - 노인교육 및 노인 건강·취미활동 지원
 - 노인회 군지회 운영 지원
 - 노인봉사활동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 여성발전기금
 -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지원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
 -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 운용실태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매년 상하반기 장학생 선정, 장학금 지급(40명)
 - ※ 적립금의 이자수입 연간 10백만원, 장학금 지급액 16백만원 정도 (6백만원 정도 부족)
 - ⇒ 부족분은 적립원금에서 충당하고 있음.
- 노인복지기금 / 여성발전기금
 - 현재 적립만 하고 있으며, 기금 집행은 하지 않고 있음.
 - ⇒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05년부터 집행계획임.

□ 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 기금 집행은 이자 수입액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 적립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당초에 의도했던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현재 금리 년 4% 정도)

Ⅲ. 개선방안

□ 기금의 존치여부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등 기금운용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 현 시점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주민, 노인, 여성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존치하되,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서 운용상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개선방안

○ 관련조례 등 개정

- 기금 집행 : 당해연도 이자 수입액 범위내 ⇒ 필요시 일정액(적립액의 5%정도 범위내)의 적립원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기금 목표액 상향 조정 및 적립기간의 최소화
 -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3억원 ⇒ 6억원(2년)
 - └ 여성발전기금 : 5억원 ⇒ 10억원(3년)

○ 기타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사회복지관련기금 통합조례 제정 시행 : '05년도 상반기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상향 조정 : 이장자녀 장학금 수준
(년 600천원⇒ 980천원 정도)
- 기금 조기 집행계획 수립 시행(목표액 적립 이전)
 - ┌ 노인복지기금 집행 : '05년도 집행계획 수립
 - └ 여성발전기금 : '06년도 집행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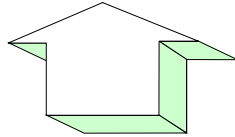
재 무 과 소 관

2005年度 主要業務 推進計劃

推進方向

民選3期 살기좋은 居昌을 꾸려나갈 財政支援

- 세수목표 달성과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추진
- 신속·정확·투명한 재정 지원부서 역할 수행



重點施策

- 1 2005년 세입목표 설정
- 2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 달성
- 3 개별 주택가격 총 조사
- 4 지방세 체납액 정리
- 5 세외수입 관리
- 6 전자입찰제 확대시행
- 7 국·공유 잡종재산의 경영적 관리
- 8 청사관리 및 민원실 환경정비
- 9 노후 관용차량 교체

1 2005년 稅入目標 設定

- ◆ 국내 경제는 5.0%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며, 세입부분은 자주재원이 전국평균 5.8%, 의존재원이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군내 세입여건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화로 취·등록세 감소가 예상되며, 보유과세 강화로 재산·종토세의 증가가 예상

□ 2005년 지방세 세입목표 설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별	2004년 목표액	2005년 세입증감요인			2005년 세입목표		
		5년 평균 증가액	특수요인	계	금 액	증가율	
합 계	21,219	919	-1,134	-215	21,004	-1.1%	
도 세	도 세계	11,249	647	-1,816	-1,169	10,080	-10.4%
	취 득 세	3,278	257	-813	-556	2,722	-17.0%
	등 록 세	4,400	303	-631	-328	4,072	-7.5%
	면 허 세	56	3	-5	-2	54	-3.6%
	공동시설세	266	13	15	28	294	10.5%
	지역개발세	24	1	-14	-13	11	-54.2%
	지방교육세	3,016	71	-281	-210	2,806	-7.0%
	과년도수입	209	-1	-87	-88	121	-42.1%
군 세	군 세계	9,970	272	682	954	10,924	9.5%
	주 민 세	1,474	70	18	88	1,562	6.0%
	재 산 세	650	27	29	56	706	8.6%
	자 동 차세	1,570	0	291	291	1,861	18.5%
	주 행 세	1,700	190	-185	5	1,705	0.2%
	농 지 세	1	0	0	0	1	
	도 축 세	152	-3	65	62	214	40.8%
	담배소비세	2,580	-53	329	276	2,856	10.7%
	종합토지세	868	19	128	147	1,015	16.9%
	도시계획세	646	16	3	19	665	2.9%
	사 업 소세	143	7	4	11	154	7.6%
	과 년 도	186	-1		-1	185	-0.5%

② 差跌없는 地方稅 目標達成

- ◆ 지방세 기초자료의 일제점검과 세원관리 체계 확립
- ◆ 과세표준액의 현실화 추진,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

□ 稅入目標

【단위 : 백만원】

계	도 세	군 세
21,004	10,080	10,924

□ 推進計劃

- 지방세정 운영체계 강화를 통한 세원탈루 예방
 - ▷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세 관리 등 월별 종합보고체제 확립
- 개별주택가격 총 조사
 - ▷ 일용인부 일시사역 : 22명
 - ▷ 예산액 : 36,546천원
- 지방세 제한세율 및 과세표준액의 현실화 추진
 - ▷ 개인균등할 주민세 5,000원 ⇒ 8,000원 인상
 - ▷ 종토세 공시지가 적용률 인상 45% ⇒ 46%이상
- 분야별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
 - ▷ 법인 조사대상 국세청자료 확보 : 3월 중
 - ▷ 탈루가 예상되는 요인별·시기별로 세무조사 계획수립 시행
- 지방세정 담당공무원 능력배양 : 연찬회 분기 1회 실시

□ 期待效果

- 지방세정 운영체계 확립으로 세원의 이탈방지
- 기초자료 전수조사와 세원발굴로 세수목표의 안정적 달성

③ 個別 住宅價格 總 調査

- ◆ 보유세제 전면개편에 따른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특성 전수조사
 - ◆ 시가평가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등록세 과표로 활용
-

□ 추진개요

- 조사대상 주택수 : 22,839주택
- 조사요원 채용 : 국비지원 확정 및 조사진척도에 따라 규모 조정
- 2006년이후 주택 평가 전담부서 신설 예정
- 관내 단독주택(농가주택 포함) 및 부속건물에 대한 현지 전수조사

□ 推進計劃

- 표준주택가격 조사 : 건설교통부(2004. 11월~12월)
- 개별주택가격 조사
 - ▷ 조사준비 : 조사반 편성, 현황도면작성, 특성조사표 작성등
 - ▷ 주택특성조사 : 2005. 1월~2월(2개월간)
 - ▷ 가격산정 : 2005. 3월(1개월간)
 -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05. 4. 1 ~ 4. 20(20일간)
 -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2005. 4. 25 ~ 4. 27(3일간)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05. 4. 30
- 이의신청 : 2005. 5. 1 ~ 5. 31(1개월간)
- 이의신청 처리 : 2005. 6. 1 ~ 6. 30(1개월간)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05. 6. 30

□ 期待效果

- 동일가격, 동일 세부담으로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 과표산정단계에서 납세자의 의견제시등 예측가능성을 증대

4 地方稅 滯納額 整理

- ◆ 체납관리는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 ◆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신속히 징수

□ 滯納額 現況 및 徵收目標(2004. 12. 20현재)

【단위 : 백만원】

계	현년도	과년도	비고
1,029	628	401	

- 특별관리대상 :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17건 177백만원)
- 현년도분 : 96%이상 징수
- 과년도분 : 30%이상 정리

□ 推進計劃

-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연 4회이상
 - ▷ 고액체납자별로 전담자를 지정 : 세무직 공무원 22명
-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 신속한 조세채권확보 : 부동산, 예금, 신용카드 등 압류
 - ▷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등록, 형사고발 등
- 체납자 조회용 PDA를 활용하여 동적인 징수활동 전개
 - ▷ 매월 15일을 변호관 영치의 날로 설정 운영
-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 인센티브 부여
 - ▷ 포상금 : 5개 기관(최우수, 우수, 장려), 5백만원

□ 期待效果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체납액 누증 방지
- 납세의식을 고양하여 함께하는 세무행정 구현

5 稅外收入 管理

- ◆ 세외수입 전산화 기반으로 부과·징수, 체납관리 체계 확립
- ◆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휴자금 활용의 극대화

□ 稅外收入 現況

- 189명의 담당자가 개별법에 의해 관리
- 세외수입 현황('04. 12. 2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현년도	과년도	비 율	비 고
부 과 액	8,526	7,177	1,349	100	
정 리 액	6,773	6,689	84	79.4	
체 납 액	1,753	488	1,265	20.6	

□ 推進計劃

- 세외수입 총괄기능 강화
 - ▷ 세외수입 전산처리로 부과·징수, 체납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년3회, 30%이상 정리
- 수수료 사용료의 요율 80%이상 현실화 추진
- 세입금 관리체제의 정비
 - ▷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의 사항 통수보 체계구축
 - ▷ 세입관서 및 공과금 수납대행점 점검 : 연 1회 이상

□ 期待效果

- 세외수입의 총괄관리 역량 제고 및 세원탈루방지
- 세외수입의 관리로 자체수입 확충

6 電子入札制 擴大 施行

- ◆ 2001년부터 군 발주 수의계약 시설공사에 대해 전자입찰제 도입
-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소 및 읍·면 시행사업까지 확대시행

□ 必要性

- 공사관련 세출예산 재배정 한도액 형평성 결여
- 사업소 및 읍·면 계약사무의 전문성 결여
- 행정의 불신요인 내재

□ 推進計劃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등록
 - ▷ 등록시기 : 2004. 12월경
 - ▷ 방 법 : 조달청 인정서 발급(공공기관이용약관동의)
- 담당공무원 교육 : 2004. 12월경
- 관내 건설업체 홍보 : 2004. 12월경
- 시행시기 : 2005. 1월경
- 대상범위 : 16개소(사업소 4, 읍·면 12)
 - ▷ 시설공사 : 건당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 期待效果

- 관급공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신력 확보
- 공사의 세출예산 재배정 한도액 문제점 보완
-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건설업체의 시간과 인력절약

7 國·公有 雜種財産의 經營的 管理

- ◆ 공공회계 복식부기 도입 대비, 재산의 경영적관리를 위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초석확립.
- ◆ 재산의 정기적 실태조사시 무단점유, 관리누락, 전대 타목적 사용, 은닉재산의 적극 발굴로 대부계약 체결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

□ 재산현황

【단위 : 천㎡】

구 분	필 지	면 적	점유율	비 고
계	3,646	36,207	100.0	
국유재산	1,204	795	2.2	
도유재산	197	148	0.7	
군유재산	2,245	35,264	97.3	

□ 토지이용 상황 실태조사

- 기 간 : 2005년 3월 ~ 12월
- 대 상 : 국·공유재산 전 필지 전수조사
- 방 법 : 지적전산 리스트에 의한 공부대조 후 현장답사
- 중점조사 사항
 - ▷ 무단점유재산 및 유희, 은닉재산의 발굴 ⇒ 사실의 현지답사
 - ▷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이용상태 실사
 - ▷ 관리누락 재산의 권리보전 여·부 ⇒ 각종 공부정리
- 조사결과 조치사항
 - ▷ 청문 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체결 ⇒ 세외수입 증대
 - ▷ 사실상 잡종재산 성질성 토지는 용도폐지 ⇒ 종류별 재산관리
 - ▷ 보존 부적합토지 관리계획 반영 매각 ⇒ 토지 이용율 증대

□ 기대 효과

-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
- 재산관련 각종 공부일치

8 廳舍 管理 및 民願室 環境整備

- ◆ 군 본청 환경개선 이후, 청사 현관 벽면·복도 및 내·외 주변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하여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 ◆ 종합민원실 전면 환경정비, 외벽 유리 청소, 조경수 관리 및 주차시설 정비로 위민 행정 구현.
-

□ 추진 개요

- 편리하고 깨끗한 공용의 청사 유지
-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주변 각종 시설물 관리
- 청사 주차장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사업 개요

-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 천정 개수 등
-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 130면 정도
- 수목 전정·보식 및 병충해 수시 방제
- 복도, 계단, 사무실 등 공용 장소 화훼류 비치

□ 사업개요

- '05년 하반기 : 청소용역 업체 시행 의뢰
- '05년 4~5월 :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 '05년 년중 : 정원수 전정 및 병충해 방제, 잡초제거후 청소
- 매월 1회 : 계단, 복도 화훼류 임대 비치

□ 기대 효과

- 쾌적하고 산뜻한 청사환경 유지로,
- 군민의 만족감 향상 및 청내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9 老後 官用車輛 交替

- ◆ 역동성 있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 ◆ 신속·정확한 업무추진으로 최적의 행정서비스 제공

□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

【단위 : 대수】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60	18	2	24	16

□ 차량 교체 기준

-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으로 최초등록일이 '95년도 이전이고,
- 12만km 이상 주행하여 차량이 노후되어 부품구입 및 수리비 증가로 관리상 어려움이 상존하는 차량 우선 구입

□ 예산액 : 70,000천원

□ 2005년도 신규 구입 계획

【단위 : 대수】

구 분	계	승 용	화 물
계	3	1	2
본 청	1		1
읍 면	2	1	1

□ 기대 효과

- 기동성 제고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여건 구축